

제5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8. 9.18.(화) 15:30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이효성 위 원 장
허 욱 부위원장
표철수 상임위원
고삼석 상임위원 (4인)

4. 불참위원 : 김석진 상임위원 (1인)

5. 회의내용

① 성원보고

② 국기에 대한 경례

③ 개회선언

④ 지난 회의록 확인

- 제47차, 제48차 및 제50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함

⑤ 서면회의 결과보고

- 제49차 서면회의 결과, <의결안건> 1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보고함
- 제49차 서면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함

⑥ 회의공개 여부 결정

-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함

7] 의결사항

가.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(2018-52-460)

- ‘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’에 대해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
 -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제 도입,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간소화 등을 통해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(18.4.17.)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한 동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함

※ 개정안 주요내용

- 위치정보사업이 ‘개인위치정보사업’과 ‘사물위치정보사업’으로 이원화되고, 사물위치정보사업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됨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(변경신고), 양도·합병·분할 신고시 제출 서류 등 세부적인 사항을 기존 신고대상인 위치기반서비스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
- 소상공인 등은 사전신고 없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되 개시 1개월 후에도 사업 지속 시 신고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에 따라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신고 등 각종 신고 사항(제출서류 등)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되, 법인 합병 등 신고서류는 기존 위치기반서비스와 동일하게 제출하도록 규정
-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(변경신고) 의무가 이용약관 공개 의무로 변경됨에 따라 이용약관을 ‘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통신단말장치의 첫 화면(또는 첫화면과 연결된 화면)’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규정
- 위치정보의 관리적·기술적 보호조치의 세부기준(고시)에 대한 규정이 없어, 관련 행정처리에 대한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이 저해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방통위가 위치정보의 관리적·기술적 보호조치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
-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한 제재처분 및 과태료 기준을 기존 신고사업자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 등

8] 보고사항

가. 「방송통신위원회 지역사무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」 제정(안)에 관한 사항

- ‘「방송통신위원회 지역사무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」 제정(안)에 관한 사항’에 대해 이 헌 혁신기획담당관으로부터 보고 받고,
- 「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를 개정하여 중앙전파관리소장에 대한 업무 위탁을 해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수행하기로 함에 따라 회수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지역사무를 신설하는 방송통신사무소장에게 내부 위임하는 규정 제정안을 원안대로 접수함

<내부위임 업무범위>

주요 위임사무명	관련 법령
○ 방송프로그램 구별기준 적합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	○ 방송법 제71조제1항부터제4항 및 시행령 제57조제7항 ○ 방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제1호
○ 방송내용의 기록·보존에 관한 사항	○ 방송법 제83조제1항 ○ 방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제2호
○ 방송법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	○ 방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제3호
○ 지상파방송보조국의 개설허가, 재허가 및 변경허가	○ 전파법 제78조제3항 ○ 전파법 제34조제1항 ○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제6항제1호
○ 지상파방송국의 개설허가 취소,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, 운용정지명령 및 운용제한명령에 관한 사항	○ 전파법 제72조 ○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제6항제4호
○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에 대한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에 대한 청문	○ 전파법 제34조제1항 ○ 전파법 제77조제3호 ○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제6항제5호
○ 전파법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(방송국 관련)에 관한 사항	○ 전파법 제90조, 제91조, 제92조 ○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제6항제6호
○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위반 여부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권한	○ 정보통신망법 제22조부터 제32조 ○ 정보통신망법 제64조1항및3항 ○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70조2항
○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	○ 정보통신망법 제65조제1항 ○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4항 ○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70조3항1호
○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및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	○ 정보통신망법 제65조제1항 ○ 정보통신망법 제76조 ○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70조3항2호

나. 「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

- ‘「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’에 대해 광진희 이용자정책총괄과장으로부터 보고 받고,

- 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사·제재 및 심의·의결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동 규정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접수함

다. 「방송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」 제정안에 관한 사항

- ‘「방송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」 제정안에 관한 사항’에 대해 박진희 이용자정책총괄과장으로부터 보고 받고,
- 조사 및 심결업무 처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실무절차를 제시하고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한 동 지침 제정안을 원안대로 접수함

※ 개정안 주요내용

- 협찬고지를 프로그램 종료 시 등에 1회에 한해 고지하도록 시점을 명확히 규정
- 현행 화면 하단에만 허용된 협찬고지 위치를 화면 하단 또는 우측 중 사업자가 선택하여 고지하도록 하고, 행사·프로그램 예고 시 협찬고지 횟수를 현행 대비 각 1회씩 확대 등

라. 「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」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

- ‘「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」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’에 대해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으로부터 보고 받고,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‘개인정보 열람청구권’(같은 법 제30조)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열람·제공 운영기준의 보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 가이드라인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접수함

※ 개정안 주요내용

- 이용자가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사업자에게 제공한 회원 가입 정보, 사업자의 이용·제3자 제공 현황 등 열람 항목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체화
- 이용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별도 메뉴나 시스템을 제공하도록 권고 등

9] 기 타

가.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차기 회의는 10월 2일(화) 오후 2시 30분에 개최하기로 함

6. 폐 회 (16:11)